

의안번호	2204022
의 퇴 인	김태년의원
회 답 일	2024.10.28.
추계번호	24C3786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제62조의 2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음.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41조의2 (사업주의 협조의무)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동 개정안은 의결을 전제로 하고있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4024호)에 따른 30일 이내 유급질병휴가 이외에,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유급휴가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주로 하여금 30일을 초과한 유급질병휴가에 따른 비용을 국가가 지급하게 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4024호) 제62조의2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해 “질병휴가”를 신청할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질병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국가재정이나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에서 분담할 수 있음¹⁾

- 동 개정안이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 제4020호)에 따르면 유급휴가 지급에 필요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따라서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는 30일 범위 초과분에 해당하는 유급휴가의 지급에 따른 비용임

□ 개정안의 조치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장래에 발생할 유급휴가 사용자 수 및 지급 기간과 급여의 단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나 현시점에서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유급휴가급여의 지급 대상은 근로자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나, 급여의 지급 요건·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하위법령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급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고 장래에 발생할 실제 질병휴가의 사용자 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음
- 유급휴가급여의 지원단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래에 발생할 질병휴가 사용자의 보수수준을 현 단계에서는 알 수 없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1)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른 해당 비용추계서 참조

2) 현재 건강보험 자체는 국가재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를 지원하고, 법률 제6619호 「국민건강증진법」 부칙 제2항에서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6%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의 추가재정소요로 볼 수 있음

Ⅲ.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장우윤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장우윤	02-6788-4741	jangwy93@assembly.go.kr